

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의정지문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(박경흠 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2044
----------	------

발의연월일 : 2022. 12. 7.

발 의 자 : 박경흠, 안영호, 문희성,
김태욱, 홍영진, 강혜순

1. 제정이유

울산광역시 중구 의회사무국의 의정계 신설에 따른 직제·직위 변경 사항을 반영하여 조문의 정확성을 제고하고 체계적으로 자치법규를 관리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의회사무국 의정계 신설에 따른 조문 정비(의사계장→담당계장)

3. 근거법규

「지방자치법」 제13조제1항 및 제2항제1호

4. 제정조례안: 따로 붙임

5. 참고사항

가. 조례안 예고: 생략(울산광역시 중구의회 회의규칙 제24조제2항제3호)

나.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: 따로 붙임

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의정자문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의정자문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조제3항 중 “의사계장”을 “담당계장”으로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3조(구성) ①·② (생략)</p> <p>③ 자문단의 사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, 간사는 <u>의사계장</u>이 된다.</p>	<p>제3조(구성) ①·② (현행과 같음)</p> <p>③ -----</p> <p>-----</p> <p>-- <u>담당계장</u>-----.</p>

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의정자문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

1. 미첨부 근거규정

- 「울산광역시 중구 조례 등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」 제3조제2항제4호
 - 조례 등의 내용이 선언적, 권고적인 형식 등으로 규정되어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

2. 미첨부 사유

-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의정자문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사무국 의정계 신설에 따른 직제·직위 변경 사항을 반영하는 것으로,
- 조례 개정으로 인한 별도 비용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비용추계서 미첨부

3. 작성자

- 소 속: 의회사무국
- 직 급: 지방행정주사
- 이 름: 박 미 숙
- 연락처: 290-4221